「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영상·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」 질의 답변

□ 공모설명회 질의 답변 (1차)

※ 질의사항은 필요시 요점 위주로 각색하였음.

연번	지침서		질의	답변
	쪽	조항		
1	8	제6조 ④	• 핵심사업자 5개는 서비스 사업자와 제작사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제작사에게 가점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? 차이는 필요해보임	▸ 핵심사업자의 운영확약은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, 핵심사업자에 대하여 "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" 평가항목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 예정으로 업태의 차이에 따른 가점부여 계획은 없습니다.
2	6	제4조 ①	•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에 기숙사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, 최근 국제적 추세는 제작사 팀이 움직이면 숙박과 식음료 시설을 요청함. 용어의 선택을 달리하여 이러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가?	▸ 영상제작시설 특성에 따라 준주거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의 30%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본 지침에 따라 '기숙사'는 불허용도에 포함되며,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 용도를 제외한 용도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	12	제9조 ②	• 제3자에게 분양이나 양도 불가, 사업계획 상 애초에 운영법인과 사업법인이 따로 있는데 추후 사업법인에서 운영법인에게 양도는 가능한가?	▸ 「12쪽, 제9조 제2항」의 "제3자"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, 이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.
4	12	제9조 ②	• 운영법인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가능, 핵심 테넌트인 경우 운영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가? 핵심 테넌트가 핵심 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?	▸ 「12쪽, 제9조 제2항」에 따라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은 운영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. 핵심 테넌트와 핵심사업자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핵심 테넌트는 운영법인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.

5	12	제9조 ②	• 운영법인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?	▸ 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.
6	9	제6조 ④	• 핵심사업자 5개 기준 중 4호 제작편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? (ex: 날짜, 방영일 기준 등)	▸ 공모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(2019년 7월 29일 ~ 2022년 7월 28일) 최초 방영한 작품의 수(제작 편수는 드라마 연속물 전체를 1편으로 계산)가 10편 이상이어야 합니다.
7	12	제9조 ②	• 운영법인 구성을 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다면, 형태는 자유롭게 진행해도 되는가?	▸ 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.
8	8	제6조 ④	• 핵심사업자와 핵심테넌트, 핵심사업자 법인이 최대 2개로 공시, 2개의 기업과 연관이 없더라도 핵심테넌트가 될 수 있는가?	▸ 공모지침서의 핵심테넌트 정의(핵심도입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핵심도입시설의 단순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핵심도입시설을 실제 사용하게 될 앵커테넌트)에 따라 핵심테넌트는 핵심도입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게될 입주사 혹은 조성에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파트너로 핵심사업자와 연관성이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.
9	2	제2조 ①	•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자본금, 설립연도나 업종 등의 제한이 있는가?	▸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년도, 자본금 등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사업신청자 평가분야에서 평가 대상입니다.
10	12	제9조 ②	• 운영법인, 제한이 없다면 펀드사 같은 간접 투자기관이 되어도 되는가?	▸ 펀드사가 출자자일 경우, 제9조 제2항에 따라 운영법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나 운영측면에서 "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"에서 역량 평가 대상입니다.
11	기타		• 영문 지침서 제공하지는 않는지?	▸ 영문지침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